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 지침

2008. 1.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3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2호
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 12. 1.	문화재청 훈령 제249호
폐지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4호
재발령 2012. 9. 7.	문화재청 훈령 제274호
폐지제정 2015. 8. 24.	문화재청 훈령 제367호

1 조(목적) 이 지침은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이하 “오계”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가 원산지인 오계로서 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주)지산농원(이하 “지산농원”이라 한다) 사육시설에 있는 오계를 말한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분산 사육 오계 포함한다)

제 3 조(문화재 보호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주)지산농원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오계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주)지산농원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오계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산농원 사육시설의 오계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논산시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 사육장내로의 오계의 반·출입 계획
-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오계의 도태 등의 계획
- 오계의 증식 계획
- 오계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제 5 조(적정사육두수) 지산농원 사육시설내의 오계 적정 사육두수는 1,000수로 한다.
다만, 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혈통의 보존)

- ① 대표이사는 오계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오계 외의 보통 닭이 지산농원 사육장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지산농원 사육장 내의 종계 오계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 ③ 대표이사는 오계가 보통 닭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오계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발생 에 대비하여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일정개체를 지산농원 사육장으로부터 1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상시 분산사육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받아야한다.

제7조(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 ① 오계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오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장 소속하에 5인 내외의 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산농원 대표의 추천을 받아 논산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오계 등 축양동물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석사이상)
- 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 기타 오계의 보호육성과 관련되어 지산농원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④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논산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 8 조(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 ① 대표이사는 상·하반기 연2회 연산 화악리 사육장 오계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지산농원 사육장의 오계는 8개월 이상 되면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실태조사,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9 조(심사결과의 처리)

- ① 대표이사는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종계 오계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오계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출입의 제한)

- ① 지산농원의 사육장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오계외의 닭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오계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오계(오계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오계에 한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다음의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오계를 사육장 밖으로 반출 할 수 있다.

1. 전염병에 대한 분산사육
2. 3년 이상이 지나 종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3. 오계홍보 등 필요한 경우

이때 오계를 분양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오계분양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도태 등)

- ①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오계는 도태하거나, 지산농원 사육장내의 등록된 오계 사육장 밖의 지역으로 격리수용(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추 등록된 오계도 3년 이상 되면 이들 개체는 대부분 종계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되며, 이후 격리수용하여 도태하거나, 자연사 하도록 한다.
- ③ 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 ① 대표이사는 오계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뉴캐슬 등/수시)
 -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 ② 대표이사는 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 시 오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지산농원 사육장 내에 소화용 모래와 소화기 등의 화재예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축사를 개방하여 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오계를 이동시켜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오계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오계 종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 오계 반·출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칙<문화재청 훈령 제172호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2009.12.14>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

이 훈령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49호 2011.12.1.>

이 훈령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74호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4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67호, 2015. 08.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74호)는 폐지한다.

표준 체형 및 특성

구 분	표 준 체 형	비 고
외 모	○몸집은 아담하며 청자색이 감도는 윤기 있는 검은 깃털을 갖고 있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 부분에 잔털이 나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날렵한 모습을 나타내어야 한다.	사진1,2 수탉, 암탉
성 격	○야생성이 강하고 특히 암탉은 알을 잘 품으며 병아리를 돌봐야 한다.	
크 기	○몸높이 - 수탉 : 28 ~ 30cm - 암탉 : 23 ~ 25cm ○몸무게 - 수탉 : 1.5kg ~ 1.7kg - 암탉 : 1.2kg ~ 1.4kg	
피 부 색	○병아리 때는 숯처럼 검으나 커가면서 점점 열어지고 성계가 되면 회흑색이 되며, 나이가 들수록 검은 빛이 옅어져야 한다.	
뼈	○뼈는 검은색의 막으로 덮여 있고, 사람의 힘으로 부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여야 한다.	
깃	○홀깃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며 톱날처럼 갈라진 5~6개의 뺨죽깃을 갖는다. 전체적인 형태는 왕관처럼 보이며 색깔은 붉은 빛이 감도는 검은색이어야 한다.	
눈	○둥글고 눈꺼풀이 있으며 눈동자와 눈자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온통 검어야 한다.	
얼 굴	○검붉은 빛을 띠며 잔털이 없어야 한다.	

구 분	표 준 체 형	비 고
부리	○크기는 중간 정도이며, 단단하고 강해야 한다 색은전체적으로 는 검은나 부리의 끝은 약간 희끄무레한 빛을 띠어야 한다.	사진3,4 수탉, 암탉 머리사진
혀	○ 희끄무레한 빛을 띠어야 한다.	
고기 수염	○크기는 중간 정도로 벋보다 약간 더 붉은 빛을 띠며, 부리 밑 에 두 갈래로 늘어져 있어야 한다.	
깃불	○크기는 작은 편이며, 색깔은 피부색과 같으나 부분적으로는 흰 색이고 청자 빛을 띠기도 한다.	
목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등 쪽으로 이행하며, 깃털이 풍부하여야 한다.	
가슴, 배	○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야 한다.	
날개	○ 잘 발달되어 있고 나는 힘이 강해야 한다.	
꽂지	○ 암탉의 꽂지는 짧고 가지런하며 뭉툭한 느낌을 주고 수탉은 긴 뿔개털을 가져야 한다.	사진5, 6 수탉, 암탉의 꽂지
정강이	○ 정강이는 짧고 가늘며 잔털이 나 있지 않아 매끈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정강이 길이는 수탉 7cm, 암탉 6cm 정도이며, 둘레는 수탉 4~4.5cm, 암탉 3~3.5cm이어야 한다.	사진7 정강이
머느리 발톱	○ 머느리 발톱은 1개이며, 나이가 들수록 길이가 자라야 한다. 보통 수탉에게만 있으나 간혹 오래된 암탉에서도 나타날 수 있 다.	
발가락	○ 발가락은 4개이며, 발가락 사이에 잔털이 없어야 하고 앞쪽에 서 보면 삼지창 모습이어야 한다.	

오계 사진



1.수탉



2.암탉



3.수탉 머리



4.암탉 머리



5.수탉 공간



6.암탉 공간



7.정강이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오계 분양 확인서

1.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의 오계
2. 분양두수 :
3. 부화일시 :
4. 분 양 처 :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의 오계의 고유 혈통을 가진 오계를 위와 같이 분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지산농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오계 종계 관리대장

등록일	생년월일	성별	관리내용				비고
			폐사	도태	입원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오계 종계 반·출입대장

일시	생년월일	성별	반·출입 내용(도태 등)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